

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변	안 호	211
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, 법률 제8423호)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근거법령 조문 변경 (안 제1조 및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비예산

나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생략

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 4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중 “지방자치법 제13조의 4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제2조(감사청구주민수)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의 200명으로 한다.	제2조(감사청구주민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
관련법규 발췌

[전부개정 2007. 5. 11 법률 제8423호]

[개정 전]

제13조의4 (주민의 감사청구)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·도는 500명,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·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<개정 2005.1.27,

[개정 후]

제16조 (주민의 감사청구)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·도는 500명, 제175조에 따른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(連署)로, 시·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